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78

###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15.~3.21.) -

March 22,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p>	<p><b>• <u>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 제시</u></b></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함</p> <p>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p> <p style="text-align: center;"><b>&lt; 개정(안)에 따른 협의 절차 &gt;</b></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임</li> <li>② 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동(同)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임</li> </ol>	<p>2023-03-16</p>
<p>산업통상 자원부</p>	<p><b>• <u>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발표</u></b></p> <p>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한 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집중 논의하였음</p>	<p>2023-03-15</p>

부처	내용	일시																						
	<p><b>‘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주요 내용</b>으로는</p> <p>① <b>초격차 기술력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amp;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li> <li>* IMEC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 최첨단 공정 보유</li> </ul> <p>② <b>혁신인재 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논의</li> </ul> <p>③ <b>지역 특화형 클러스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금년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 성장기반 조성</li> <li>· 소부장 특화단지 : 기술 자립화·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li> <li>· 기회발전특구(입법중) : 非수도권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내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부여</li> </ul> </div> <p>④ <b>튼튼한 생태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 추진</li> <li>-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 수립</li> </ul> <p>⑤ <b>투자특국(投資特國)</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3년 1,000억원) 지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 ↓</th> <th colspan="3">당기분 ↓</th> <th rowspan="2">증가분* ↓</th> </tr> <tr> <th>대기업 ↓</th> <th>중견기업 ↓</th> <th>중소기업 ↓</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 ↓</td> <td>1 → 3 ↓</td> <td>5 → 7 ↓</td> <td>10 → 12 ↓</td> <td rowspan="3">+ 3 → 10 ↓</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 ↓</td> <td>3 → 6 ↓</td> <td>6 → 10 ↓</td> <td>12 → 18 ↓</td> </tr> <tr> <td>국가전략기술 ↓</td> <td>8 → 15 ↓</td> <td>8 → 15 ↓</td> <td>16 → 25 ↓</td> <td>4 → 10 ↓</td> </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방안 검토</li> </ul>	구 분 ↓	당기분 ↓			증가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일 반 ↓	1 → 3 ↓	5 → 7 ↓	10 → 12 ↓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6 → 10 ↓	12 → 18 ↓	국가전략기술 ↓	8 → 15 ↓	8 → 15 ↓	16 → 25 ↓	4 → 10 ↓	
구 분 ↓	당기분 ↓			증가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일 반 ↓	1 → 3 ↓	5 → 7 ↓	10 → 12 ↓	+ 3 → 10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6 → 10 ↓	12 → 18 ↓																					
국가전략기술 ↓	8 → 15 ↓	8 → 15 ↓	16 → 25 ↓		4 → 10 ↓																			

부처	내용	일시																					
	<p><b>⑥ 통상역량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li> <li>-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 보완</li> </ul> <p>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키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b>&lt; 산업별 육성전략 핵심내용 &gt;</b></p> <table border="1" data-bbox="325 869 1313 1966"> <thead> <tr> <th>첨단산업</th> <th>비전</th> <th>세부과제</th> </tr> </thead> <tbody> <tr> <td>반도체</td> <td>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li> <li>⇒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li> <li>⇒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li> <li>⇒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li> <li>⇒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li> </ul> </td> </tr> <tr> <td>디스플레이</td> <td>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li> <li>⇒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천억원 지원</li> <li>⇒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li> <li>⇒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천명 양성(~'32년)</li> </ul> </td> </tr> <tr> <td>이차전지</td> <td>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 20조원 투자(~'30년)</li> <li>⇒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li> </ul> </td> </tr> <tr> <td>바이오</td> <td>바이오향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li> <li>⇒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 시설 활용)</li> <li>⇒ 전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li> <li>⇒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li> </ul> </td> </tr> <tr> <td>미래차</td> <td>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li> <li>⇒ 30년까지 SW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 양성</li> <li>⇒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li> </ul> </td> </tr> <tr> <td>로봇</td> <td>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li> <li>⇒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부품 독자적 기술 확보</li> <li>⇒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li> </ul> </td> </tr> </tbody> </table>	첨단산업	비전	세부과제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li> <li>⇒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li> <li>⇒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li> <li>⇒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li> <li>⇒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li> </ul>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li> <li>⇒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천억원 지원</li> <li>⇒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li> <li>⇒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천명 양성(~'32년)</li> </ul>	이차전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 20조원 투자(~'30년)</li> <li>⇒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li> </ul>	바이오	바이오향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li> <li>⇒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 시설 활용)</li> <li>⇒ 전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li> <li>⇒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li> </ul>	미래차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li> <li>⇒ 30년까지 SW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 양성</li> <li>⇒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li> </ul>	로봇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li> <li>⇒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부품 독자적 기술 확보</li> <li>⇒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li> </ul>	
첨단산업	비전	세부과제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li> <li>⇒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li> <li>⇒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li> <li>⇒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li> <li>⇒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li> </ul>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li> <li>⇒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천억원 지원</li> <li>⇒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li> <li>⇒ 차세대 기술 선도인력 9천명 양성(~'32년)</li> </ul>																					
이차전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 20조원 투자(~'30년)</li> <li>⇒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li> </ul>																					
바이오	바이오향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li> <li>⇒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 시설 활용)</li> <li>⇒ 전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li> <li>⇒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li> </ul>																					
미래차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li> <li>⇒ 30년까지 SW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 양성</li> <li>⇒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li> </ul>																					
로봇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li> <li>⇒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부품 독자적 기술 확보</li> <li>⇒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li> </ul>																					

부처	내용	일시																																																						
	<p><b>‘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주요 내용</b>으로는</p> <p>① <b>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하였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정</li> <li>-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 예정</li> </ul> <p>② <b>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 신속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b>도심융합특구</b>(국토부), <b>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b>(산업부), <b>스마트혁신지구*</b>(중기부) 등을 <b>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b> 예정</li> </ul> <p><small>* (지정혜택) 낙후지역 내 스마트사무공간 등 구축 지원 / '23년 약 40억원 지원</small></p> <p>③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b>“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b></p> <p style="text-align: center;"><b>&lt;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후보지</th> <th>면적</th> <th>중점산업</th> <th>후보지</th> <th>면적</th> <th>중점산업</th> </tr> </thead> <tbody> <tr> <td>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td> <td>710만㎡</td> <td>반도체</td> <td>전북 완주 수소특화</td> <td>165만㎡</td> <td>수소저장·활용 제조업</td> </tr> <tr> <td>대전 나노·반도체</td> <td>530만㎡</td> <td>나노·반도체, 우주항공</td> <td>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td> <td>339만㎡</td> <td>방위, 원자력</td> </tr> <tr> <td rowspan="3">충청 천안 미래모빌리티</td> <td>417만㎡</td> <td>미래모빌리티, 반도체</td> <td>대구 미래스마트기술</td> <td>329만㎡</td> <td>미래자동차·로봇</td> </tr> <tr> <td>오송 철도클러스터</td> <td>99만㎡</td> <td>철도</td> <td rowspan="2">경북 안동 바이오생명</td> <td>132만㎡</td> <td>바이오의약 (백신, HEMP)</td> </tr> <tr> <td>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td> <td>236만㎡</td> <td>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td> <td>경주 SMR (혁신원자력)</td> <td>150만㎡</td> <td>소형모듈원전 (SMR)</td> </tr> <tr> <td>광주 미래자동차</td> <td>338만㎡</td> <td>미래차 핵심부품</td> <td>울진 원자력 수소</td> <td>158만㎡</td> <td>원전 활용 수소</td> </tr> <tr> <td>전남 고흥 우주발사체</td> <td>173만㎡</td> <td>우주발사체</td> <td>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td> <td>93만㎡</td> <td>천연물 바이오</td> </tr> <tr> <td>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td> <td>207만㎡</td> <td>식품 (푸드테크)</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b>총 15개소, 4,076만㎡</b></td> </tr> </tbody> </table>	후보지	면적	중점산업	후보지	면적	중점산업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710만㎡	반도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165만㎡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대전 나노·반도체	530만㎡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339만㎡	방위, 원자력	충청 천안 미래모빌리티	417만㎡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329만㎡	미래자동차·로봇	오송 철도클러스터	99만㎡	철도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132만㎡	바이오의약 (백신, HEMP)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236만㎡	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경주 SMR (혁신원자력)	150만㎡	소형모듈원전 (SMR)	광주 미래자동차	338만㎡	미래차 핵심부품	울진 원자력 수소	158만㎡	원전 활용 수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173만㎡	우주발사체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93만㎡	천연물 바이오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207만㎡	식품 (푸드테크)	<b>총 15개소, 4,076만㎡</b>			
후보지	면적	중점산업	후보지	면적	중점산업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710만㎡	반도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165만㎡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대전 나노·반도체	530만㎡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339만㎡	방위, 원자력																																																			
충청 천안 미래모빌리티	417만㎡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329만㎡	미래자동차·로봇																																																			
	오송 철도클러스터	99만㎡	철도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132만㎡	바이오의약 (백신, HEMP)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236만㎡	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경주 SMR (혁신원자력)	150만㎡	소형모듈원전 (SMR)																																																	
광주 미래자동차	338만㎡	미래차 핵심부품	울진 원자력 수소	158만㎡	원전 활용 수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173만㎡	우주발사체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93만㎡	천연물 바이오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207만㎡	식품 (푸드테크)	<b>총 15개소, 4,076만㎡</b>																																																					

부처	내용	일시																																
	<p style="text-align: center;"><b>&lt; 국가산업단지 조성전략 비교 &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기존 국가산단</th>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기존 국가산단</th> </tr> </thead> <tbody> <tr> <td>입지</td> <td>· 중앙 주도 입지 선정·개발</td> <td></td> <td>· 지역에서 입지 제안, 육성전략 마련</td> </tr> <tr> <td>업종</td> <td>· 지역 특화 산업</td> <td></td> <td>· 미래 첨단산업</td> </tr> <tr> <td>규제</td> <td>· GB, 농지 등 규제 전제 하에서 추진</td> <td></td> <td>· 입지규제 적극 완화→최적입지 공급</td> </tr> <tr> <td>산업구조</td> <td>· 단순 제조 생산 거점</td> <td></td> <td>· 산업 <b>순주기</b> 지원 생태계</td> </tr> <tr> <td>토지이용</td> <td>· 토지개발자 중심 부지 조성</td> <td></td> <td>· 기업·산업계 수요 반영</td> </tr> <tr> <td>지원방식</td> <td>· 산단별 조성·지원전략 마련</td> <td></td> <td>· <b>법정부 추진지원단</b> 가동</td> </tr> <tr> <td>개발방식</td> <td>·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별도 고려 無</td> <td></td> <td>· <b>스마트그린산단</b> 조성·운영</td> </tr> </tbody> </table>		기존 국가산단	⇒	기존 국가산단	입지	· 중앙 주도 입지 선정·개발		· 지역에서 입지 제안, 육성전략 마련	업종	· 지역 특화 산업		· 미래 첨단산업	규제	· GB, 농지 등 규제 전제 하에서 추진		· 입지규제 적극 완화→최적입지 공급	산업구조	· 단순 제조 생산 거점		· 산업 <b>순주기</b> 지원 생태계	토지이용	· 토지개발자 중심 부지 조성		· 기업·산업계 수요 반영	지원방식	· 산단별 조성·지원전략 마련		· <b>법정부 추진지원단</b> 가동	개발방식	·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별도 고려 無		· <b>스마트그린산단</b> 조성·운영	
	기존 국가산단	⇒	기존 국가산단																															
입지	· 중앙 주도 입지 선정·개발		· 지역에서 입지 제안, 육성전략 마련																															
업종	· 지역 특화 산업		· 미래 첨단산업																															
규제	· GB, 농지 등 규제 전제 하에서 추진		· 입지규제 적극 완화→최적입지 공급																															
산업구조	· 단순 제조 생산 거점		· 산업 <b>순주기</b> 지원 생태계																															
토지이용	· 토지개발자 중심 부지 조성		· 기업·산업계 수요 반영																															
지원방식	· 산단별 조성·지원전략 마련		· <b>법정부 추진지원단</b> 가동																															
개발방식	·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별도 고려 無		· <b>스마트그린산단</b> 조성·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식품 의약품 안전처</p>	<p>• <b>소규모 업체의 효율적 해썹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b></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가 해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식품업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함</p> <p><small>* 소규모 해썹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업체 관리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해썹 제도</small></p> <p>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의 주요 지원 전략은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고 비용 등 해썹 적용·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규제혁신으로 제도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썹 재인증 유효기간을 조정(3년→4년)하고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영업자 자율로 전환해 검사 비용, 심사 준비 등 영업자 부담 완화</li> </ul> </li> <li>② <b>해썹관리에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개발·제공하고 해썹 자체평가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보다 편리하게 해썹 적용·운영 가능</li> </ul> </li> <li>③ <b>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을 지원(총 40억원)하고 업체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해 해썹 유지·관리 비용 경감</li> </ul> </li> </ol>	<p>2023-03-17</p>																																

부처	내용	일시
	<p style="text-align: center;"><b>&lt; 2023년 소규모 해썹(HACCP) 업체 지원 전략 &gt;</b></p> <p style="text-align: center;"><b>&lt; 규제 혁신으로 제도적 지원 &gt;</b></p> <p>⇒ <b>‘해썹 재인증 유효기간 조정(3→4년)’</b>으로 심사 준비와 수수료 부담완화  * 「식품위생법」등 개정안 마련('23년~) 및 관련 법률 개정추진('24년~)</p> <p>⇒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에 따라 <b>‘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단계적으로 자율 전환’</b>해 검사 비용부담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3년~)</p> <p>⇒ 검 교정(calibration)된 <b>‘표준계측 장비의 해썹 업체간 공유사용’</b>이 가능해져 검·교정 비용 부담 완화 ('23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3년~)</p> <p style="text-align: center;"><b>&lt; 해썹 관리에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지원 &gt;</b></p> <p>⇒ <b>‘해썹 자체평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b>으로 서류없이 간편하게 제출('23년~)</p> <p>⇒ <b>‘소규모 해썹 표준기준서 개발 및 보급’</b>으로 해썹 손쉽게 적용·운영('23년7월~)</p> <p>⇒ <b>‘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b>로 소규모 업체 확산기반 마련('23년~,김치류)  * ('22) 빵류 → ('23) 김치류 → ('24) 과자류 → ('25) 냉동식품 → ('26) 음료류</p> <p style="text-align: center;"><b>&lt;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gt;</b></p> <p>⇒ 소규모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b>‘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b>(총 40억원)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해썹 준비자금 신청 업체당 최대 천만원 지원</p> <p>⇒ <b>‘식품원료 위해요소분석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b>으로 검사비용 절감('23년~)</p> <p>⇒ <b>‘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b>로 소규모 업체 확산기반 마련('23년~,김치류)  * 현장 방문 해썹 검증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실습 등 업체 맞춤형 기술지원</p>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2023.3.20. 시행, 일부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li> </ul> <p>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b>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b>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b>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b>하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b>의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비용’을 추가</b>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6조, 제10조의4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2항, 제30조 삭제, 제39조의3 신설, 제48조의2 신설 등)</p>	2023-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2023.3.20. 시행)</li> </ul> <p>「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b>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등의 서식을 신설</b>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에 제127호 신설, 별지 제148호서식 및 별지 제149호서식 신설)</p>	2023-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2023.3.20. 시행)</li> </ul> <p>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b>사업부문별 자산·부채 및 손익 구분경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b>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2023-03-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 제10조의7제1호,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변경, 제10조의8 신설 등)</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3.20. 시행)</p> <p>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p> <p>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투과단체의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p> <p>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14조제3항, 제41조의2 신설 등)</p> <p>*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재화거래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 거래가 1억원 이하일 것</p>	2023-03-20
	<p>•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3.20. 시행)</p> <p>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p> <p>이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는 칸을 추가하려는 것임 (별지 제4호서식)</p>	2023-03-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b>「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2023.3.20. 시행.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p> <p>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p> <p>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 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등)</p>	2023-03-20
	<p>• <b>「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2023.3.20. 시행)</p> <p>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 주류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1호)</p>	2023-03-20
	<p>• <b>「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2023.3.20. 시행. 다만, 제1조제2항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p> <p>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 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냉열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력세율 적용 대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열병합용 또는 수소</p>	2023-03-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제조용으로 최종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제2항제1호다목, 제2조의2 신설, 제16조제1항 등)</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3.20. 시행)</p> <p>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p> <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의3, 제8조의4, 제13조 신설, 제13조의9제1항, 제14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등)</p>	2023-03-20
문화체육관광부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2024.3.22. 시행 예정.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 예정)</p> <p>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b>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b>하고,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며,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b>행정처분을 면제</b>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p> <p>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b>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b>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p>	2023-03-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 (제2조제10호)</li> <li>②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제11호·제33조제2항·제38조제9항 신설 및 제45조)</li> <li>③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을 포함함 (제6조제4호 신설)</li> <li>④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 (제12조의3)</li> <li>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제16조제4항)</li> <li>⑥ PC방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b> (2023.3.15. 시행)</li> </ul> <p>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의 범위에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장비의 범위에 기타 무선통신장비, 방사선 장치,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려는 것임 (별표 1 신설)</p>	2023-03-15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b> (2023.3.21. 시행)</li> </ul> <p>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품질 기준 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p> <p>「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활성화와 수소발전량 거래의 일원화를 위해 수소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 원칙의 예외사유로 추가하며,</p>	2023-03-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종전의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상향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p> <p>종전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지역냉난방사업은 15만킬로와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30만킬로와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b>유형 구분 없이 50만킬로와트로 올리는</b>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의5에 제5호의2 신설, 제19조제1항에 제5호 신설, 제59조의2 등)</p>	
공정거래위원회	<p>• 「<b>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b>」(2023.3.21. 시행)</p> <p>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p> <p>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제42조제4항 삭제 등)</p>	2023-03-15
금융위원회	<p>• 「<b>은행법 일부개정령</b>」(2023.9.22. 시행 예정)</p> <p>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제6장에 제43조의4 신설, 제55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등)</p>	2023-03-2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보건 복지부	<p>• <b>「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 (안 제3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등의 분만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월평균 분만 건수(100건 이상)를 제한하지 않고, 수습기관을 확대</li> </ul> <p>② <b>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25조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됨('22.12.1.)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 현행화</li> </ul> <p>③ <b>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 (안 제34조의2 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주요 기능, 설치 원칙 및 최소 성능, 촬영 범위 등 (제34조의2,3)</li> <li>-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등 (제34조의4,6)</li> <li>-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사유 등 (제34조의5)</li> <l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 등 (제34조의7)</li> <li>- 열람·제공 요청 절차,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 기준 등 (제34조의8,9,11)</li> <li>-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제34조의10)</li> <li>-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촬영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 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 서식 마련 (별지 제33호 제33호의3 서식)</li> </ul> <p>④ <b>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 (안 제40조제1호 및 제6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의 글자 크기 규정 완화</li> <li>-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항목 추가(주소,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li> </ul> <p>⑤ <b>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안 제40조제4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과목에 ‘치과’가 중복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치과’를 생략해서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p>⑥ <b>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 (안 [별표3] 및 [별표4])</b></p>	2023-03-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3/17(금)~4/26(수)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a> 로 제출	
환경부	<p>• <b>「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며,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법률 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p>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자의 장치 및 부품 반납 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조의2의 제목, 안 제1조의2의제2항 신설, 현행 제3조~제10조 삭제 등)</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7(금)~4/27(목)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a>로 제출</p>	2023-03-17
	<p>• <b>「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p> <p>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안 제36조제1항, 안 제79조의3, 안 제79조의7제5호 등)</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7(금)~4/27(목)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a>로 제출</p>	2023-03-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b>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p> <p>이에 따라, <b>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이 되는 대상 기관 및 계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b></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안 제30조의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등으로 규정</li> </ul> <p>② <b>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 (안 제40조의4제3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하향*하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li> </ul> <p>*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p> <p>③ <b>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규정 (안 제41조의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하며, 계약의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등은 완납증명 예외사유로 규정</li> </ul> <p>④ <b>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 등 규정 (안 제46조 및 제47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대행기관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대행기관 인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li> </ul>	2023-03-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6(목)~4/25(화)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a>로 제출</p>	
	<p>• <b>「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b></p> <p>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직권 폐지에 따른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 안 제36조2항 신설, 별지 제47호 신설 등)</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6(목)~4/25(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a>로 제출</p>	2023-03-16
	<p>• <b>「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p> <p>이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안 제3조의4 신설, 안 제145조의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함</li> </ul> <p>② <b>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신설 (안 제104조의5, 안 제104조의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정함</li> </ul>	2023-03-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b>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기간 (안 제62조의2 신설, 안 제104조의8 및 제104조의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소득감소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정함</li> </ul> <p>④ <b>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안 제24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채용 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되 제외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i> </ul> <p>⑤ <b>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6(목)~4/25(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a>로 제출</p>	
	<p>• <b>「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체류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명확화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p> <p>이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전산을 통한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각한 경영상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임의 가입절차 마련 (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마련함</li> </ul>	2023-03-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② <b>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안 제14조의2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li> </ul> <p>③ <b>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안 제82조의2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함</li> </ul> <p>④ <b>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 (안 제80조의2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3.1.1 6.30)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li> </ul> <p>⑤ <b>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마련 (안 제78조 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약속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i> </ul> <p>⑥ <b>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6(목)~4/25(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a>로 제출</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p>• <b>「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p> <p>이에,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p> <p>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규정토록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 (안 제14조의6 신설)</li> <li>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 (별표 1의2 개정)</li> <li>③ 과태료 기준에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 (별표 2 개정)</li> </ul> <p>※ 의견 제시기간 : 2023/3/20(월)~4/24(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a>로 제출</p>	2023-03-20
	<p>• <b>「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p> <p>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p> <p>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p>	2023-03-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p> <p>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 (안 제155조 신설)</li> <li>②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 (안 제3조의2 신설)</li> <li>③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 (안 제25조의3 신설)</li> <li>④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 (안 제120조제9항 신설)</li> </ul> <p>※ 의견 제시기간 : 2023/3/20(월)~4/24(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a>로 제출</p>	
	<p>• <b>「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주차장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 (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li> </ul> </li> <li>② <b>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 (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li> </ul> </li> <li>③ <b>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 (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도에 한정하여 규정</li> </ul> </li> <li>④ <b>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 (안 제11조제7항 신설)</b></li> </ul>	2023-03-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21(화)~5/1(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a>로 제출</p>	
중소벤처기업부	<p>•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li> <li>②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14조의6)</li> <li>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 (안 제27조제3항)</li> </ul>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7(금)~4/26(수)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a>로 제출</p>	2023-03-17
	<p>•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 (안 제5조의2)</li> <li>②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의3)</li> </ul>	2023-03-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3/17(금)~4/26(수)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a> 로 제출	
금융위원회	<p>•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소액공모 한도 확대 (안 제120조제1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함</li> </ul> <p>② <b>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 (안 제188조제1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7(금)~4/26(금)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a>로 제출</p>	2023-03-1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b>「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b></p> <p>다수가 참여한 거래정보기록을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보관하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한 상황임</p> <p>또한 한국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는 암호자산과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고, 암호자산 중 기존 원화와 유사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은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암호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암호자산에서 제외하고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 (안 제2조)</li> <li>②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 (안 제5조)</li> <li>③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암호자산업자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li> <li>④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안 제8조)</li> <li>⑤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li> </ul>	2023-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p> <p>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p>	2023-03-20
기획재정위원회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2인)」</b></p> <p>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p> <p>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하였음</p> <p>그러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정책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p> <p>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상황임</p> <p>한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도 현행법 제130조에 의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p> <p>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8 신설)</p>	2023-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p> <p>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성격으로 당시에는 백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음</p> <p>그러나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화학물의약품 산업의 육성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반 기술이 된다는 점과 2021년 기준 2,600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17%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b>바이오·화학물의약품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자 함</b></p> <p>또한, <b>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고자 함</b></p> <p>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0%에 육박하고, 제조설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의 수는 3개에 불과함</p> <p>이는 반도체 생태계가 소수 기업 성과에 의해 국가 경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부품 공급망의 주요 업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의 조화로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전략기술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p> <p>이에 <b>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b></p> <p>그리고 조세지출은 그 본질이 지출항목이며 세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행령에 그 산업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b>현행 국가전략기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b></p>	2023-03-15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b></p> <p>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p>	2023-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수소 및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이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p> <p>또한,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p> <p>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p>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4인)」</p> <p>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p> <p>최근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는데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음</p> <p>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은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 등에 못지 않게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산업임</p> <p>또한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터리·반도체 등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국내 제조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p>	2023-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 주위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b>「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법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p> <p>그러나 얼마 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사업자가 편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논란이 발생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대, 20대 등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8조제1항제24호)</p>	<p>2023-03-17</p>
	<p>•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p> <p>이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 4호의2 신설 등)</p>	<p>2023-03-21</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b></p> <p>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음</p> <p>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제2항)</p> <p>②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2제3항)</p>	2023-03-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 <b>「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양이원영의원 등 37인)」</b></p> <p>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가 추진중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p> <p>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p> <p>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p>	2023-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고자 함 (안 제1조)</li> <li>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자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li> <li>③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5조)</li> <li>④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8조)</li> <li>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1조)</li> <li>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li> <li>⑦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li> <li>⑧ 기재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li> <li>⑨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li> <li>⑩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li> <li>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li> <li>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함 (안 제25조)</li> </ul>	2023-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b></p> <p>현행법 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p> <p>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함. 이 가운데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 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5)</p>	2023-03-16
	<p>• <b>「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0인)」</b></p> <p>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p> <p>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둬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제18조의5 및 제19조의2 각각 신설)</p>	2023-03-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p>• <b>「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b></p> <p>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p> <p>GIA(Global Industry Analysts)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약 180조원이던 ‘디지털헬스’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7년 약 600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세계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를 구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p> <p>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함께 ‘디지털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되어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 (안 제2조·제3조)</li> <li>② 보건의료인은 질병의 진단·치료, 건강의 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이 비용·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4조)</li> <li>③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안 제6조)</li> <li>④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li> </ol>	2023-03-1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li> <li>⑥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8조 및 제29조)</li> <li>⑦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li> <li>⑧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사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li> </ul>	
	<p>• <b>「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의원 등 10인)」</b></p> <p>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p> <p>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건강지원기기 등 디지털의료제품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는 물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p> <p>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도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확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p> <p>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전통적인 의료기기 기업 외에 대형 IT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이 디지털의료제품 R&amp;D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미국과 독일 등은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디지털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 DVG)」 제정을 통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을 보건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 등 규제체계의 개편을 추진중에 있음</p> <p>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의료제품에만 적합하게 구성되어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제품의 개발과 전주기(TPLC, Total Product Life Cycle) 관리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도 어려운 실정임</p> <p>따라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p>2023-03-16</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함 (안 제2조·제3조)</li> <li>②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안 제5조·제6조)</li> <li>③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li> <li>④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li> <li>⑤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8조 및 제29조)</li> <li>⑥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li> <li>⑦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li> </ul>	
	<p>•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p> <p>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p> <p>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음</p> <p>따라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医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대면医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医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등)</p>	2023-03-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b>「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생산·보급 등을 확대하기 위한 품질기준, 품질인증, 의무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현행법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 35조 등)</p>	2023-03-15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3/23(목) 14:00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3/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7호 발간 -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	
	3/22(수)	「Data & Law」 제2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3/22(수)	「World & Law」 2023-6호 발간 - 진짜 같은 딥페이크, 속지 않으려면?	
	3/23(목)	「현안, 외국에선?」 제56호 발간 - 일본 정부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예산정책처	3/20(월)	「예산정책연구」 제12권제1호 발간	
입법조사처	3/20(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영국 하원 선거제도	
	3/20(월)	「외국 입법·정책 분석」 -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3/21(화)	「이슈와 논점」 발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	

## [별첨1] 제404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치개혁 특위	3/22(수) 10:00	국회선진화소위	- 국회 원구성 제도 개선 관련 법안 심사
	3/22(수) 17:00	전체회의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법사위	3/21(화) 16:00	전체회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채택 - 고유법 상정, 타위법 심사
	3/22(수) 10:00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
기재위	3/21(화)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3/22(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교육위	3/20(월) 16:00	전체회의	-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
과방위	3/21(화) 14:00	전체회의	-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대안 등) -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방송 관련 법안 제정) - 법안 의결
외통위	3/21(화) 14:3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현안보고
국방위	3/23(목) 09:3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 현안보고
행안위	3/20(월) 10: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3/21(화) 10: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3/22(수) 14: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문체위	3/20(월) 14:00	전체회의	- 현안질의
	3/21(화) 10:00	문화예술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3/22(수) 10:00	청원심사소위	- 청원 심사
	3/22(수) 14:00	체육관광법안 심사소위	- 법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농해수위	3/20(월) 10:00	농림소위	- 법안 심사
	3/21(화) 10:30	해양소위	- 법안 심사
	3/23(목) 11: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산자중기위	3/20(월) 10:00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3/21(화) 14:00	중기소위	- 법안 심사
	3/23(목) 09: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복지위	3/21(화) 10: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3/22(수) 10: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3/23(목) 10:15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법안 의결, 법안 및 청원 상정
환노위	3/21(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국토위	3/21(화)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3/22(수)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3/23(목) 09: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0(월) 10:00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3/20(월) 10:00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산업 국회포럼	이헌승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0(월) 14:00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	하영제·김정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0(월) 14:00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박주민·오기형 의원실	국회도서관 회의실
3/20(월) 14:00	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地籍)의 미래상	김선교·장철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3/20(월) 14:00	토큰(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	정우택 의원실, 블록미디어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1(화) 09:30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3/21(화) 10:00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홍익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3/21(화) 13:30	지방공항 글로벌시대 -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민홍철·김두관·김정호, 박재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1(화) 14:00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1(화) 14:00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	김홍걸·조정식·김한정, 박정, 김경만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3/21(화) 14:00	소상공인·자영업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방안	민병덕·이동주 의원실 등	입법조사처 회의실
3/21(화) 14:00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황희·권철승·김병기, 김성원·이헌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1(화) 14:00	스타트업과 원원은 불가능한가	강훈식·김한규·정희용, 황보승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2(수) 10:00	금융노동자 간담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3/22(수) 10:00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박완주·정필모·고민정, 장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2(수) 10:00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	한무경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2(수) 13:30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3(목) 13:20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김용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3/24(금) 07:00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	정우택·노응래 의원실, 폴리뉴스 등	63빌딩 별관 4층
3/24(금) 13:30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16(목) 07:30	<b>「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5강</b> -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 전쟁	유튜브
국회도서관	3/15(수)	<b>금주의 서평 제619호 발간</b> -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3/17(금)	<b>「국회도서관 웹진」 제59호 발간</b> - 국회도서관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등	
예산정책처	3/13(월)	<b>「2023 대한민국 재정」 발간</b> - 제1부 재정의 이해 -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 -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3/14(화)	<b>「NABO 재정추계&amp;세제 이슈」 제22호 발간</b>	
입법조사처	3/13(월)	<b>「이슈와 논점」 발간</b> -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	

##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13(월) 14:00	<u>반도체 산업 세금 감면이 정답?</u>	장혜영 의원실, 참여연대 세재정책개혁센터	의원회관 7간담회실
3/14(화) 10:00	<u>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u>	홍영표·김진표·홍익표·추경 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4(화) 10:00	<u>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u>	홍성국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3/14(화) 13:30	<u>대학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u>	이태규 의원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3/14(화) 14:00	<u>기후위기시대, 국가유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u>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3/14(화) 14:00	<u>한국 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 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u>	이은주·강민정 의원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원회관 3간담회실
3/15(수) 13:20	<u>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u>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3/15(수) 14:00	<u>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u> - 4차산업시대 에너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희 의원실, (사)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5(수) 14:00	<u>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u>	김학용 의원실	폴리텍대학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안현정   변호사                      | T. 02-316-1637 | E. hjeahn@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 E. ehkim@shinkim.com   |
| • 서치원   변호사                      | T. 02-316-7225 | E. cwseo@shinkim.com   |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